의안번호	제 452 호
의 결	2016년 월 일
연 월 일	(제 회)

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(안)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					
제출연월일	2016년 9월 27일					

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

의 안 번 호 452

제출연월일 : 2016. 9. 27 .

제 안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○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□ 출연목적

-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 제3조3항에 따라 지방행정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연구·조사를 위하여 행자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 재워 지워
 - ※ 전국 시도 균등 출연사업

□ 출연 예정액 : 200,000천원(도비 100%)

- 산출근거 : 2017년 광역시도 출연금 3,300백만원
 - 16 시·도 각 200백만원 (세종시 100백만원)
 - ※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사회 의결('14.12.23.): 시도 기획실장 +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 등

〈각 시노 줄면 중기계획(2U16~2U2U)〉									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			
출연금	1.5억원	2억원	2억원	2.5억원	2.5억원				

□ 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: 천원)

					-
구 분		2016년	2017년	증감	
(기준보조율)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(C)	(D=C-A)
도비(100%)	150,000	150,000	0	200,000	50,000

① 출자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정책기획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▎ ▘ ▔▘ ▎	정책관리팀	송재구	이선호	반안나	2134

기관명	한국지방행정연구원							
출자·출연대상	 ○ 대 표 : 하혜수 (*재단법인) ○ 일반현황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-6 - 인 력 : 63명(원장1, 연구·전문직40, 투자분석직8, 연구지원직14) 							
출자:출연 사 업 비	출자·출연 예정금액: 200,000천원(도비 200,000천원)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백만원) 구 분 (기준보조율) 계(A+B) 당초(A) 추경(B) (C) (D=C-A) 도비(100%) 150,000 150,000 0 200,000 50,000 ※ 산출근거: 2017년 광역시도 출연금 3,300백만원 - 16 시·도 각 200백만원 (세종 100백만원) ◆ 증감내역 - 일반회계 세입규모 매년 3%(물가상승률) - 연구인력을 2017~2020년까지 매년 2인 충원하여 연구인력 확보(정원대비 9명 결원) -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연구원 이전에 따른 추가 운영재원 소요 ◆ 2016~2020 광역시도 출연금 중기계획(안) - '16년 1.5억원 / '17년 2억원 / '18년 2억원 / '19년 2.5억원 / '20년 2.5억원							
출자·출연 필 요 성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및 주민 행복도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·개발 활동 수행							
근거·법령	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」제3조3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							
지도감독 부서 의 견 (총 평)	○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자부와 시도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서, 각 시도는 연구원 운영비, 시설비, 기금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※ 각 시도 균등 출연 ○ 중앙-지방간 상생·균형적 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 등을 고려할 때, 한 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함							
첨부자료	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자·출연기관 현황 3. 출자·출연사업계획서							

□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①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경영평가) 2015년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경영평가: "보통"
 - 행자부 산하 9개기관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장 성과연봉에 반영
 - 연구원의 주요사업인 연구분야에 있어 높은 점수를 받음(7개 기관 중 4위) ※ 양호 2. 보통 2. 미흡 3
- (성과계획서 성과 달성도 :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)
 -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성과 만족도
 - · 실적 : 89.8점(103.8% 달성) / · 목표 : 86.5점

②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자부와 시도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, 우리도를 비롯한 각 시도는 설립주체로서 매년 일정부분 출연금을 연구원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음 ※ 각 시도 매년 균등 출연
 - 우리도 출연내역 : '15년 200백만원 / '16년 150백만원
- 지방행정에 관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과제를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선진 지방자 치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및 정책지원 기능을 지원하는 등 지방행정 발전에 중요한 역할 담당 ※ 지자체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(행자부 고시 제2014-2호, '14.11.29.)
- 이상과 같은 중앙-지방간 상생·균형적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지속적 역할 수행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

③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

(단위:천원)

구 분	2016년		전년대비		
	(C)	기관 요구액(A)	실과 산정액(B)	증감(B-A)	증감액 (B-C)
출연금	150,000	200,000	200,000	_	50,000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	출연의	유사	사업방식	사업의	투자대비	재원분담
명확성	타당성	중복성	효율성	시급성	효과성	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①-②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,,,,,,	1	전화번호 : 02-3488-7373										
설립근	:거	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								홈페이지:www.krila.re.kr		
주요연	현								(출자, 출연) (국가와 시방자지난제 공동 축연기과)			
인원현			계				정규직			비정규직(무기)		
('16.8 _' 현원기			65명				63명			2명		
		직 책 성 명 (직책명) (익명처리) (가정				(가장 출	주요경력 최근의 1개 경		: 기재)	임 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	
		원 장 하〇〇			경북대 형	행정학부 교수	2		2015.04.13~2018.04.12			
('16.8-	임 원 (*16.8월 당연직이 기준) (비상임		' '	22	2인	지방행정 지역발정	쿠(5): 지방행정연구원장 정연수원장,자치제도정책관, 전정책관,지방재정정책관 시・도(17): 기획관리(조정)실장			당해직위 재임기간		
		임의직이. (비상임		8	인	학계 전문가				2015.06.08~2017.06.07		
주요기	냥	- 지방투	- 자시	나업	타당	성조사 🌣	획 및 자료 평가 및 연· 에 대한 조	7				
기 (단 ⁴	}본금 ¹ 위:백민	i. 난원)			37,219)	출연액 (단위:백만원)			44,573		
		연도	201	14	2015	2016	사산			53,344		
최근3년 간 예산	일반	예산액 ^{2」}	8,17	71	8,227	8,270	- - 재무현황	-				
현황	회계	지자체 지원액 ³	1,60	00	1,700	2,550	(단위:백만	원)	부채	16,125		
│ (단위: │ │ 백만원)	특별	예산액 ² 」	-		2,725	4,673	(15.12.317	ਦੇ	ы н 1.	27.240		
,,	회계	지자체 지원액 ³	-		1,600	-			자본 ¹	37,219		
2015\ 경영성			3	총수	익		총비용			당기순이익		
(단위:백년			1	10,30	02		9,0	014		1,288		

- 1」 자본금은 자본(자산-부채)의 한 부분이며, 자본은 자본금, 자본잉여금,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
-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
- 3」 해당 기관 예산액(2」번항목)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

①-③ 출자·출연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	그빈	출자	-
주관부서	정책기획관	正	출연	200,000천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·개발
- 지방행정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

□ 출연개요

○ 사 업 명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지원

○ 사업기간 : 2017. 1 ~ 12월

○ 출연금액: 200,000천원(도비 100%)

○ 주요내용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사업 지원

○ 출연근거: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제3조3항

□ 산출기초

○ 전국 16 시·도 균등출연 : 각 200,000천원 (세종 100,000천원)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구 분	합 계	'09년	'10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
출연금	517	-	-	-	-	67	100	200	150

□ 기대효과

- 충청북도의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발굴
- 지방자치에 대한 객관적, 중립적 정책연구 활성화

□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○ 이사회 의결(2014.12.23.)을 통해 전국 균등 출연을 합의한 바, 우리도만 미출연 곤란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 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>

제6조(출자·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 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

- 제3조(출연금)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, 그 밖의 수입 금에 의하여 운영한다.
 -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 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,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3.8.]